

는 특허料納付期間이經過한後六月
을限하여特許料를追納할수 있다.

②前項의境遇에는第六十八條의規定
에依하여定하여 전特許料의二倍에相
當한金額을納付하여야 한다.

③第一項의規定에依한追納期間內에
特許料를追納하지 아니한때에는特許
料를納付할期間이經過한때에遡及하
여特許權이消滅된것으로본다.

第四章 審 查

第七十二條 (審查主義) 特許의出願
이있을때에는審查官으로하여금 이를
審查하게한다.

第七十三條 (審查官의除斥) 第九十一
九條의規定은審查官의審查權與除斥
권은特許出願이拒绝할理由 있다고認め
되었을때에는出願人에對하여拒绝理由
를明示하고期間을指定하여意見書提
出의機會를주어야한다.

第七十五條 (出願公告) ①審查官은
特許出願을拒绝할理由이있을때에는出
願公告를할것을決定하여야 한다.

②前項의規定에依한決定이있을때에
는特許局은出願年月日,發明者姓名,
出願人姓名,名稱,住所및出願의要
旨를特許公報에掲載하여出願公告를
하여야한다.

③出願公告가있을때에는그出願한發

特許料를追納하지 아니한때에는特許
料를納付할期間이經過한때에遡及하
여特許權이消滅된것으로본다.

明은出願公告가있을날로부터特許權
의effecy이發生한것으로推定한다.

④特許局은出願公告와同時에出願人에게
에서公衆의閱覽에供하여야 한다.

⑤特許局은出願人의請求에依하여出
願公告決定이있을날로부터六月을超
過하지 아니하는期間에限하여出願公
告를猶豫할수 있다.

⑥國防上秘密을要하는出願에對하여
는出願公告決定을하지 아니하고查定
을하여야 한다.

第七十六條 (特許異議申請) ①出願
公告가있을때에는누구든지出願公告
日로부터一月以内에特許局에特許異
議申請을할수 있다.

②特許異議申請은特許異議申請書를
提出하고 그理由를記載하여야 한다.

③利害關係人은特許異議决定이있을
때까지 그特許異議에參加할수 있다.

④特許異議에關하여는審判參加에關
한規定을準用한다.

第七十七條 (異議申請의追加等)

①異議申請의理由를訂正 또는追加하
고자하는자는늦어도異議申請期間經
過後本法또는本法에依한命令의定한
期間内에하여야 한다.

②證據方法의追加提出期間도前項과
같다.

는出願公告決定을하지 아니하는異議
决定을하고 그결과에對하여는拒绝查定을
면에對하여는拒绝决定을하여야 한다.

③特許異議决定에는理由를불이어야
한다.

④特許異議决定에對하여는不服을申
請하지 못한다.

**第七十九條 (職權에依한拒绝查定에
對한異議申請)** ①審查官이出願公告
後職權에依하여發現한理由로拒绝하
는境遇에는異議申請이있어도 그異議
申請理由및證據에對하여는審查및決
定을하지 아니하고異議申請人에게拒
絕査定證本을送付하여야 한다.

②出願人이前項의拒绝査定에對하여
不服이있을때에는前項의異議申請도
抗告審判에서併合審判한다.

第八十條 (準用規定) 特許異議에關
한證據調查의費用에關하여는審判에
關한費用의規定을準用한다.

第八十一條 (異議申請의競合) ①審
查官은二以上의異議申請이있는境遇
에는理由를불이어야 한다.

①特許異議申請이있을때에는審查官은
은特許異議申請書副本을出願人에게
交付하고期間을指定하여이에對한答
應書의提出機會를주어야 한다.

②審查官은前條第一項에規定한特許
異議申請期間 및前項의期間經過後特
許異議에對하여決定을하고 그出願에
對하여特許與否의査定을하여야 한다.

③特許異議决定에는理由를불이어야
한다.

④特許異議决定에對하여는不服을申
請이있을때에는審查官은査定을하여
야 한다.

第八十二條 (特許査定) 特許異議申
請이있을때에는審查官은査定을하여
야 한다.

第八十三條 (假保護의遡及的消滅)
出願公告後出願의抛弃、取下나無效
處分이있는데、拒絕査定이나審決이
確定된때는第六十二條第一項但書
의境遇를除外하고特許가無效로된때
에는第七十五條第三項에依한效力은
처음부터發生하지 아니한것으로본다

第八十四條 (出願公告의特例) 第十
一條 및第十二條의規定에依한正當權
利者の出願이있는때에는審查官은이
미出願公告한것에對하여는다시出願
公告을하지 아니하고査定을하여야 한
다.

에는그審查나決定을併合 또는分離할
수 있다.

②一異議申請의理由에對하여審查한
結果申請理由가成立될때에는다른申
請理由및證據에對하여는審查決定을
하거니와는다른申請理由가成立될때에는
其의審查를요하지 아니하는異議
决定을하고 그결과에對하여는拒绝査定을
면에對하여는拒绝决定을하여야 한다.

③前項의審查를요하지 아니하는異議
申请人에對하여는拒绝査定證本을送
付하여야 한다.

에는그審查나決定을併合 또는分離할
수 있다.

②一異議申請의理由에對하여審查한
result申请理由가成立될때에는다른申
請理由및證據에對하여는審查決定을
하거니와는다른申請理由가成立될때에는
其의審查를요하지 아니하는異議
决定을하고 그결과에對하여는拒绝査定을
면에對하여는拒绝决定을하여야 한다.

③前項의審查를요하지 아니하는異議
申请人에對하여는拒绝査定證本을送
付하여야 한다.

에는그審查나決定을併合 또는分離할
수 있다.

②一異議申請의理由에對하여審查한
result申请理由가成立될때에는다른申
請理由및證據에對하여는審查決定을
하거니와는다른申請理由가成立될때에는
其의審查를요하지 아니하는異의
决定을하고 그결과에對하여는拒绝査定을
면에對하여는拒绝决定을하여야 한다.

③前項의審查를요하지 아니하는異의
申请人에對하여는拒绝査定證本을送
付하여야 한다.

에는그審查나決定을併合 또는分離할
수 있다.

②一異의申請의理由에對하여審查한
result申请理由가成立될때에는다른申
請理由및證據에對하여는審查決定을
하거니와는다른申請理由가成立될때에는
其의審查를요하지 아니하는異의
决定을하고 그결과에對하여는拒绝査定을
면에對하여는拒绝决定을하여야 한다.

③前項의審查를요하지 아니하는異의
申请人에對하여는拒绝査定證本을送
付하여야 한다.

특허審判을請求할수있다.

一 特許請求範圍의減縮

二 誤記의訂正

三 不明瞭한記載의釋明

②特許權者は錯誤로因하여 1.以上의

發明을 1.特許出願으로 한것을 謀明한

境遇에 각發明마다 각자의 特許을附

與하는 特可審判을請求할수있다.

③第一項第一號의境遇에는 그殘部가

前項의境遇에는 그各發明이 特許出願

當時에 獨立하여 新規의發明인것이어

야한다 이境遇에 明細書, 圖面의訂正

또는 分割許可審決이確定된境遇에는

처음부터 訂正된境遇에 依

하여 그發明이 特許된것으로 본다.

第五十七條 (特許請求範圍의變更禁

止) 前條의境遇에 있어서는 特許請求

의範圍를擴張 또는 變更하지 못한다.

第五十八條 (特許證의訂正) ①特許

局의過失로 因한 特許의錯誤가 特許局

의記録其他書類에 依하여 判明되었을

때에는 特許局長은 職權으로 써 特許에

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限度内에서 이

를 訂正하고 特許證을添附할 訂正證書

또는 新特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.

② 訂正한 特許證은 訂正한形式으로

처음부터 交付한 것과 같은 效力을 가진

다. 第五十九條 (特許權者以外의者의保

護) 特許權者는 專用實施權者, 質權

者또는 第十五條第二項, 第五十一条

의規定에 依한 實施權者와 同條第三項의

許權을 搞棄하거나 第五十六條의規定

에 依한 特可審判請求를 하지 못한다.

第六十條 (物上代位) ① 質權은 本法

에 依한 補償金 또는 特許發明實施에 對

하여 받을 錢金이나 物件에 對하여 도이

를 實行할수 있다. 但 支給 또는 引渡前

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.

② 質權設定以前에 特許權者가 特許發

明을 實施하고 있는境遇에 그 特許權이

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.

第六十一條 (特許의無效事由) ① 特許

가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는境遇에는

審判에 依하여 이를無效로 하여야 한다.

一、特許가 第二條, 第四條, 第五條,

第三十五條의規定에違反하여 許與

된 때

二、特許를 받을權利를 承繼 할수없는

者 또는 特許를 받을權利를 認定하는者

에 對하여 特許가 許與된다.

三、特許發明 明細書 또는 圖面에 그實

施에 必要한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

였거나 不必要한事項을 記載하여 그

實施를 不能 또는 困難하게 한다.

四、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 依한

條約 또는 이에準하는 것에違反되어

其與境外遇에 그違反이前三號의境

週期 종료

五 特許가條約 또는 이에準하는 것에

依하여 第三十五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② 特許가條約 또는 이에準하는 것에

依하여 第三十五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③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④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⑤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⑥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⑦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⑧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⑨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⑩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⑪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⑫ 特許가 第三十六條의規定에違反된

에 대하여

錄한다.

② 錄에 開하여 必要한事項을 開令으

로 定한다.

第六十五條 (特許證의發給) 特許의

查定 또는 審決이確定되었을 때에는 이

를 特許公報 및 特許登録簿에 登錄하고 特許證을 發給

한다. 第五十六條의許可審決이確定되

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第六十六條 (特許公報의發刊) 特許

局은 特許公報 및 特許發明 明細書를 發

行하여 本法에規定한事項을 이에記載하

여야 한다.

第六十七條 (特許標識) ① 特許된物

에에는 特許標識을 하여야 한다. 物件

에 特許標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그物件

의 容器나 包裝에 이를 하여야 한다.

② 特許權者는 專用 實施權者, 實施權

者 또는 第四十條第一號의 實施者에 對

하여 特許標識을 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.

③ 前二項의規定은 特許된物件의 要部

를 分離하여 販賣 또는 擴布하는境遇에

에 대하여 特許標識을 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.

④ 特許權者는閣令의 定하는 바에

依하여 特許料를 납부하여야 한다.

第六十八條 (特許登錄料金) 特許權

의 登錄을 받은者は閣令의 定하는 바에

依하여 特許料를 납부하여야 한다.

利害關係人의請求에 의하여職權으로

써 그實施權을取消할 수 있다.

③ 特許權者 또는請求人은 第一項의規定에 의한實施權의許與나前項의規定에依한特許取消의處分 또는前二項의請求와却下에對하여不服이 있을 때에 그決定을 받은 날로부터四十日以内에法院에訴訟을提起할 수 있다.

④ 第一項의規定에 의하여實施權을許與하는境遇에는特許局長은補償金에對하여도 이를決定하여야 한다.

第四十六條 (特許權의存續期間) 第四十六條 (特許權의存續期間)

① 特許權의存續期間은出願公告가 있은境遇에는 그公告日로부터出願公告가 없는境遇에는特許日로부터十二年으로써終了한다. 但特許出願日로부터十五年을超過하지 못한다.

② 第十一條의規定에 의하여正當權利者에게特許를許與하는境遇에特許를 받을 수 있게 된特許出願에對하여는 前項의規定에 의한十二年の期間은 그 第十二條의規定에 의하여正當權利者에게特許가許與하는境遇에는 第一項의規定에 의한十二年の期間은 特許出願公告日의翌日로부터起算한다.

③ 第十二條의規定에 의하여正當權利者에게特許가許與하는境遇에는 第一項의規定에 의한十二年の期間은 特許出願公告日의翌日로부터起算한다.

第四十七條 (特許權의譲渡) ① 特許權은 이를譲渡할 수 있다.

② 特許權이共有인境遇에는共有者는他共有者의同意없이 그持分을譲渡하

지못한다.

第四十八條 (專用實施權制度) ① 特許權者는 그特許發明에對하여期間에依한實施權을許與한

場所 및內容의制限을加하여他人에게

專用實施를許與할 수 있다.

② 特許權者는專用實施權의設定에 있어特許權者自身도 그特許發明을實施할 수 있는趣旨의約定을 할 수 있다.

③ 專用實施權者는事業과 같이移轉하는境遇를除外하고는特許權者の承諾없이 그專用實施權을移轉하지 못한다.

④ 專用實施權者는特許權者の承諾없이 그專用實施權을實質的目的으로 하거나他人에게專用實施權을設定 또는特許發明의實施를許與하지 못한다.

⑤ 專用實施權을實質目的으로 하거나他人에게專用實施權을設定 또는特許發明의實施를許與하지 못한다.

⑥ 專用實施權設定以前에 받은實施權이登錄을하지 아니하고第五十五條第

三項의效力이있는 때에는登錄이없어 도專用實施權에對하여效力이 있다.

⑦ 專用實施權設定으로서前項의規定에依하여自己의特許發

명이實施되는境遇에相對方이特許發

명이實施가必要하여 그實施許與를要求

하는境遇에는 그相對方이正當한理由로

이實施를許與하지 아니하거나相對方

의實施許與를얻을수 없는境遇는審判을請求할 수 있다.

⑧ 第四十九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 登錄前에設定한 質權者에對하여 그效果을가진다.

⑨ 第五十二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 登錄前에設定한 質權者에對하여 그效果을가진다.

⑩ 第五十二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 登錄前에設定한 質權者에對하여 그效果을가진다.

⑪ 第四十九條의規定은 實質權의移

轉, 變更, 消滅이나處分, 制限 또는 제한이나特許權을目的으로하는質權의

設定, 移轉, 變更, 消滅 또는 그處分의制限은相繼其他一般承繼의境遇를

except하고는登錄없이는 그效力이发生하지 아니한다.

第五十條 (共有者的實施權) 特許權

이共有인境遇에共有者가契約으로써

特別한約定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

다른共有者の同意없이特許發明을自

身이實施할 수 있다.

第五十一條 (實施의許與) ① 特許權者는他人에게特許發明實施를許與할

수 있다.

② 特許權이共有인境遇에는共有者는 다른共有者の同意없이他人에게特

許權을登錄할 수 있다.

③ 特許發明實施權으로서前項의實施

權이 아닌 경우 그實施事業과 같이 또는

特許權者の承諾이 있는境遇에 이를移

轉할 수 있다.

第五十二條 (實施許與의審判) ① 特許權者는他人의發明特許 또는登錄實

用新案이나登錄意匠을實施하지 아니

하고는自己의特許發明을實施할 수 없

는境遇에 그他人이正當한理由로이實

施를許與하지 아니하거나實施許與를

받을 수 없을 때에는審判을請求할 수 있

다. 但特許權發生後三年이經過하지

아니한 것은例外로 한다.

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自己의特許發

明이實施되는境遇에相對方이特許發

明이實施가必要하여 그實施許與를要求

하는境遇에는 그相對方이正當한理由로

이實施를許與하지 아니하거나相對方

의實施許與를얻을수 없는境遇는審判을請求할 수 있다.

第五十三條 (強制實施에依한補償金支拂) ① 第四十五條 또는前條의規定

에依한實施權者는特許權者, 實用新

案權者나意匠權者에對하여相當補

償金을支拂하여야 한다.

② 前項의實施權者는補償金을支拂하

는場合에는 다음各號의 one에該當하는境

遇에限하여 그明細書 또는圖面의訂정

하고서 그特許發明이나登錄實用新案 또는登錄意匠을實施할 수 있다.

第五十四條 (實施權의附隨性) ① 第

五十二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 그特

許權에附隨한다.

② 特許發明實施權으로서前項의實施

權이 아닌 경우 그實施事業과 같이 또는

特許權者の承諾이 있는境遇에 이를移

轉할 수 있다.

第五十五條 (實施權의登錄) ① 特許

의實施權을登錄한 때에는 그登錄日以

후에特許權을取得한者나또는 그特許

權을目的으로하여質權을設定한者에

對하여도 그效力을가진다.

② 第十五條第二項要는第四十一條乃

至第四十三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

登錄이없더라도前項의效力을가진다.

③ 第五十二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

登錄前에設定한 質權者에對하여 그效

力이있다.

④ 第四十九條의規定은 實質權의移

轉, 變更, 消滅이나處分, 制限 또는 제한이나特許權을目的으로하는質權의

設定, 移轉, 變更, 消滅 또는 그處分의制限은相繼其他一般承繼의境遇를

except하고는登錄없이는 그效力이发生

하지 아니한다.

第五十六條 (明細書, 圖面의訂正및特

許權의分割) ① 特許權者는特許發

明의明細書나圖面에不安全한것이 있

을 때에는 다음各號의 one에該當하는境

遇에限하여 그明細書 또는圖面의訂정

을 때에는 다음各號의 one에該當하는境

遇에限하여 그明細書 또는圖面의訂정

請求) 特許에關한證明、特許證의寫
本、書類의 胎本이나抄本 또는 圖面의
調製를請求하거나書類의閱覽、胎寫
를必要로하는者は特許局長에게 이를
申請할수 있다. 但特許局長이秘密을
要하는것이라고認定하는것은 이를特
可하지아니할수 있다.

**第三十五條 (外國人の能力) 外國人으
로서國內에住소나營業所가없는者は
特許에關한權利를享有할수 없다. 但
條約、協定 또는法律에依하여우리國
民에게自國內의住所 또는營業所의有
無의不拘하고權利를許容하는國家의
國民에對하여는例外로한다.**

**第三十六條 (條約의優先) 特許에關
하여條約또는이에準하는것에別段의
規定이있을때에는그規定에 따른다.**

**第三十七條 (發明獎勵補助金) 商工
部長官은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發
明獎勵를爲한補助金을交付할수 있다.**

第二章 特許權

**第三十八條 (特許權의發生) 特許權
은登錄에依하여发生한다.**

**第三十九條 (特許權의內容) ① 特許
權者는物件의特許發明에있어서는그
物件을製作、使用、販賣또는擴布할
權利를獨占하고方法의特許發明에있
어서는그方法을使用하거나그方法에
依하여製作된物件을使用、販賣또는
擴布하는權利를獨占한다.**

**第四十條 (特許權의限界) 特許權의
效力은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것에
비치지아니한다.**

**一、研究또는試驗을하기爲한特許發
明의實施**

**二、國內를通過하여不適한運輸具 또
는그裝置**

**三、特許出願當時에國內에있었던物
하여條約또는이에準하는것에別段의
規定이있을때에는그規定에 따른다.**

**第四十一條 (先使用者의實施權) 特
許出願時에善意로國內에서그發明實
施事業을하거나事業設備를가진자는
그特許發明에對하여事業의目的인發
明範圍內에서實施權을가진다.**

**第四十二條 (無效審判請求登錄前의
權利者の實施權) ① 特許의無效審判
請求의登錄前에善意로다음各號의一
에該當하고國內에서그發明實施事業
을하거나또는事業設備를가진자는그
特許發明에對하여事業의目的인發
明範圍內에서實施權을가진다.**

**第四十三條 (實用新案權의存續期間
의登錄에依하여发生한다.)**

**第四十四條 (特許權의公用徵收)
二、無效로된特許에關하여 그發明의
正當權利者에게特許를許與한境遇
에있어登錄을받은原特許權者
는그特許發明을實施하지못한다.**

**三、前二號의境遇에있어서 그無效로
된特許에對하여實施權을取得하
고 그登錄을받은者 但實施權登錄
이없더라도第五十五條第二項의效
力이있는境遇에는登錄을要하지아
니한다.**

**四、前二號의境遇에있어서 그無效로
된特許에對하여實施權을取得하
고 그登錄을받은者 但實施權登錄
이있더라도第五十五條第二項의效
力이있는境遇에는登錄을要하지아
니한다.**

**第四十五條 (不實施의境遇의強制實
施또는特許取消) ① 特許權者が特許
를받은後에繼續하여三年以上正當한
理由없이 그發明을國內에서實施하지
아니하는境遇에公益上必要하다고認
定될때에는特許局長은利害關係人の
請求에依하여 그實施權을他人에許與
할수 있다.**

**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實施權이許與
된後繼續하여三年以上正當한理由없
이 그實施權者가 그發明을國內에서實
施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特許局長은**